

부천시공공체육시설관리·운영위탁동의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2001. 11. 2
- 나. 제출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2001. 11. 2
- 라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9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11. 8) 상정
- 제9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1. 11. 9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체육청소년과장 정광열)

제안이유

- 공공체육시설 관리·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
- 체육시설 관리·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고자 함

시설현황

시 설 명	시 설 내 역	비 고
부 천 레 포 츠 공 원 (종합운동장·공도장 및 부대시설)	·주경기장(22,509㎡) : 축구장, 육상트랙	
	·보조경기장(10,334㎡) : 축구장, 육상트랙	
	·테니스장 : 9,917㎡, 관리동(318㎡), 관람석 846석	
	·공도장 : 연면적 1,027.68㎡, 지상 2층, 50m×145m	

소사올림픽스포츠센터	·수영장(50m×10레인), 에어로빅, 헬스장 ·체육관(농구, 배구, 배드민턴, 탁구 등)	
시민운동장	·경기장 7,140㎡, 트랙 200m,	
동네체육시설	·90개소(원미 69개소, 소사 9개소, 오정 12개소)	

위탁업무 추진계획

○ 위탁운영 방침결정 → 시의회동의 → 위·수탁협약체결 → 시설물 인계·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 개시

관련규정

-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-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(사업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궁도장 위탁에 문제가 없는지? ○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는지? ○ 체육시설 전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, 방안 경영이 되지 않을지?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궁도회측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되었음 ○ 프로그램운영 및 수입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○ 공단에 위탁되더라도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,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공공체육시설 관리·운영 위탁 동의안

의안번호	제533호
의결년월일	2001. 11. 13 (제91회)

제출년월일 : 2001. 11. 2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사유

- 공공체육시설 관리·운영을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중앙정부의 작은정부 구현에 적극 부응하고
- 체육시설 관리·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□ 시설현황

시 설 명	시 설 내 역	비 고
부 천 레 포 츠 공 원 (종합운동장·공도장 및 부대시설)	·주경기장(22,509㎡) : 축구장, 육상트랙	
	·보조경기장(10,334㎡) : 축구장, 육상트랙	
	·테니스장 : 9,917㎡, 관리동(318㎡), 관람석 846석	
	·공도장 : 연면적 1,027.68㎡, 지상 2층, 50m×145m	
소 사 올 림 픽 스 포 츠 센 터	·수영장(50m×10레인), 에어로빅, 헬스장 ·체육관(농구, 배구, 배드민턴, 탁구 등)	
시 민 운 동 장	·경기장 7,140㎡, 트랙 200m,	
동 네 체 육 시 설	·90개소(원미 69개소, 소사 9개소, 오정 12개소)	

□ 위탁업무 추진계획

- 위탁운영 방침결정 → 시의회동의 → 위·수탁협약체결 → 시설물 인계·인수 → 수탁기관 운영개시

□ 관련규정

- 체육시설의설치·이용에관한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-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 제17조(사업)